고용노동부

한국형 실업부조
국민취업지원제도가
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!



▪ 지원서비스

구 분		Ⅰ유형	Ⅱ유형
내용	취업지원 서비스	✔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**심리·취업·진로상담** 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**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** ✔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**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**	
	구직촉진 수당	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**최대 300만원**(월50만원×6개월)	
	취업활동 비용		참여수당 **최대 195만 4천원** (직업훈련 참여시)
	취업성공 수당	취(창)업시 **최대 150만원**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시)	
	조기 취업 성공 수당	Ⅰ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(창)업시 **1회 50만원 지급**	
취업지원기간		12개월(6개월 연장 가능)	
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경우		✔ 생계급여수급자 ✔ 실업급여·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(청년수당 등)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✔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✔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상인 자	

▪ 지원자격

*선발형 :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

구 분		Ⅰ유형		Ⅱ유형		
요건	연령	요건심사형 / 선발형* 15~69세	청년 18~34세	특정계층 15~69세	청년 18~34세	중장년 35~69세
	소득	중위소득 60% 이하	중위소득 120% 이하	무관		중위소득 100% 이하
	재산	4억원 이하		무관		

용인 고용복지+센터
(강남대역)
031-289-2213,2280

강남대역	
기관명	연락처
(주)코리아잡스원	031-286-0392
스탭스(주)	031-546-8893
(주)제니엘	031-306-8363
(주)맥시머스	031-282-8219

기흥역	
기관명	연락처
(주)굿잡	031-8067-5401

수지구청역	
기관명	연락처
(사)한국고용복지센터	031-265-3700
(주)제이엠커리어	031-546-3451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!

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올라잇!

올해는 꼭 취업성공!

특정계층

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신용회복지원자 ⑤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⑥ 위기청소년 ⑦ 구직단념청년 ⑧ 여성가구주 ⑨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⑪ 건설일용직근로자 ⑫ 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 ⑬ 미혼모(부)·한부모 ⑭ 청소년부모 ⑮ 기초연금수급자 ⑯ 영세자영업자

※ 위기청소년 등 :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, 보호종료 아동 등

소득·재산

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(❶신청인 본인, ❷신청인의 배우자, ❸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 자녀))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
- **(소득)** 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이 해당
- **(재산)**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
* (2022년 기준 중위소득)

*단위 : 원/월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중위소득 60%	1,166,887	1,956,051	2,516,821	3,072,648	3,614,709	4,144,202	4,668,355
중위소득 100%	1,944,812	3,260,085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	6,907,004	7,780,592
중위소득 120%	2,333,774	3,912,102	5,033,641	6,145,296	7,229,418	8,288,405	9,336,710

취업경험 확인

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이상(요건심사형), 기준 미만(비경활 선발형)

❶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❷ 특고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❸ 사업자등록기간. 다만,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❹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
- (특고·프리랜서 등)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,056천원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시)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■ 신청방법

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

신청방법 온라인(www.kua.go.kr) 또는 오프라인(방문)

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
신청기간 연중 상시

제출서류

- (필수) 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  *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



Ch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 ⊕

☞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상담 챗봇에서 확인해주세요!